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안규백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직책과 계급을 일치시켜 복무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대위~소장 계급 대상으로만 시행 중인 직책 계급장 제도를 상·원사에게 확대 적용하기 위함임.

3. 주요내용

상사 및 원사 진급예정자도 직책계급장 부착이 가능토록 관련 조항을 개정(제17조의2)

4. 주요토의과제

없음.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.

다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2. ~ 2026. 2.) 예정

3) 부패영향평가 등 요청 : 관계기관과 협의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

군인복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의 각 호에 7과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원사

8. 상사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의2 (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진급 예정인 군인은 인력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편제(편제)상 진급 예정인 계급에 해당하는 군인이 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경우에는 진급 예정인 계급을 기준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. 1. 소장 2. 준장 3. 대령 4. 중령 5. 소령 6. 대위	제17조의2 (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진급 예정인 군인은 인력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편제(편제)상 진급 예정인 계급에 해당하는 군인이 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경우에는 진급 예정인 계급을 기준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. 1. 소장 2. 준장 3. 대령 4. 중령 5. 소령 6. 대위 <u>7. 원사</u> <u>8. 상사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	
연 락 처	(02) 748 - 5129